이사회규정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적용범위)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「정관」 등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지배구조내부규범」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(2015. 3. 27., 2016. 10. 31. 본항 개정)
- 제 3 조(구성 등)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「지배구조내부규범」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(2010. 3. 3., 2015. 3. 27., 2016. 10. 31. 본항 개정)
- 제 4 조(이사의 권한 및 의무)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,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이사는 「상법」 등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"감사위원회"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⑤ 사외이사는 취임시 회사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⑥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 및 평가 하고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(2024. 9. 30. 본항 신설)
- 제 5 조(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) 이사회는 제 11 조 제 2 항 제 3 호에서 정한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한 조언·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부담한다.
 - 1.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,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
 - 2.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완전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
 - 3.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
- 제 6 조(의장)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며,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,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(2010. 3. 3. 본항 개정)
 -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③ 의장이 사고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후 최초 이사회 개최시 임기만료로 의장이 없을 때 그 임시의장의 순위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.
 - 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활동내용, 자체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⑥ (2015. 3. 27. 본항 삭제)
- 제 7 조(대표이사 회장) ① 대표이사 회장(이하 "회장"이라 한다)은 "회장후보추천위원회"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(2018. 3. 23. 본항 개정)
 - 1. "회장후보추천위원회"는 후보자를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 7 일전까지 이사회에 추천한다. (2018. 3. 23 본호 개정)
 - 2.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회장 후보를 회장으로 선임한다.
 - ② 회장이 유고시 직무대행의 순서는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직제순으로 한다. (2016. 10. 31. 본항 개정) [2015. 3. 27. 본조 개정]
- 제 8 조(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.
 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,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 (2016. 10. 31. 본항 개정)
 - ③ 회장,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,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. 의장이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회장 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(2016, 10, 31, 본항 개정)
- 제 9 조(소집통지)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, 소집 목적, 일시,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, 전보,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(컴퓨터 통신, 전자우편 등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,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이사회의 회의자료를 각 이사에게 제1항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. 그러나,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 [2016. 10. 31., 2018. 4. 19. 본조 개정]
- 제 10 조(회의) 이사회의 성립 및 의사의 결정은 회의에 의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(부의사항) ①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 - ②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가. 주주총회소집 및 부의 안건의 결정
 - 나.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다.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
 - 2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 - 가. 그룹(사업부문 포함) 경영목표,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(2015. 3. 27. 본목 개정)
 - 나.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전체 예산
 - **3. 자회사 관리** (2009. 7. 10. 본호 개정)
 - 가. 자회사 등의 설립·취득·합병·분할·매각·청산. 다만, 「금융지주회사법」상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건으로 출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이하인 손자회사 등은 제외한다. (2013. 12. 13., 2016. 10. 31., 2023. 3. 2. 본목 개정)
 - 나.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한 시정, 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

다.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등 자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에 준하는 자금지원 (2023, 2, 23, 본목 신설)

4. 중요 계약 등에 관한 사항

- 가.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계약(용역계약인 경우는 건당 금액이 100억원 초과)
- 나.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
- 다. 건당 소가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 · 포기 및 응소 포기
- **5.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** [2015, 3, 27, 본호 개정]
- 가.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
- 나. 정관 및 [별표]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·개정 또는 폐지. 다만, 법령 기타 외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 수정은 제외한다. (2010. 3. 3., 2015. 3. 27. 본목 개정)
- 다. 해산.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- 라.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 의장,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. 다만, 회장에 대한 선임은 제 7 조에서 정한 "회장후보추천위원회"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. (2018. 3. 23. 본목 개정)
- 마.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(2009. 4. 30. 본목 개정)
- 바.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
- 사.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융사지배구조법"이라고 한다) 제 8 조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(2016. 10. 31. 본목 신설, 2025. 3. 26. 본목 개정)
- 아. 이사보수규정, 집행임원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영진 성과급 환수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당사자에게 부여된 성과급(지급 미확정분, 기지급분 및 미지급분)의 환수범위 등 결정 (2017. 2. 24. 본목 신설)

6. 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

- 가. 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을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발행의 결정
- 나. 자본금의 변경, 제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

7. 기타사항

- 가.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(2015. 3. 27. 본목 개정)
- 나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- 다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라.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
- 마. (2015. 7. 23. 본목 개정, 2020. 3. 20. 본목 삭제)
- 바.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- 사. 관계법령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
- 아. "그룹 경영관리위원회" 및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(2013. 12. 13., 2015. 3. 27. 본목 개정)
- 자.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의 수립·갱신 및 위기 단계의 자체정상화수단 선정·이행에 관한 사항 (2021. 10. 8. 본목 신설)
- 차.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(2025. 3. 26. 본목 신설)
- 카.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2013. 12. 13. 본목 개정)

- ③ 제 2 항 각 호에서 '자기자본'이라 함은 지주회사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로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계연도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. (2023. 3. 2. 본항 개정)
- ④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- 1.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
- 2.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 관리의무 이행 관련 사항 (2024. 10. 24. 본호 신설)
- 3.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
- 4.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(2013. 12. 13. 본호 개정)
- ⑤ 이사회는 제 2 항 및 제 4 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"지주 경영위원회"에 위임할 수 있다. (2013. 12. 13., 2015. 3. 27., 2018. 12. 7. 본항 개정)
- 제 12 조(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후보 자격 검증)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후보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한다. 다만, 회장후보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② 전항의 이사후보와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자회사 등과 여신거래 등이 있는 경우 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회사 등의 여신심사협의회 등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
[2009. 12. 18. 본조 신설]

- 제 13 조(위원회) ① 이사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률을 준수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"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", "회장 후보추천위원회", "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", "계열사대 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", "감사위원회", "리스크관리위원회", "평가보상위원회", "내부 통제위원회" 및 "ESG 위원회"를 두며, 필요한 경우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를 두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(2015. 3. 27., 2016. 10. 31., 2018. 3. 23., 2020. 3. 20., 2025. 3. 26. 본항 개정)
 - ② (2016. 10. 31. 본항 삭제)
 - ③ (2016. 10. 31. 본항 삭제)
 -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. (2009. 4. 30. 본항 개정)
 - ⑤ 각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규정에 따른다.
- 제 14 조(제안설명) 이사회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(계열사의 임직원 포함)으로 안건에 관하여 제안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. (2009, 12, 18, 2015, 3, 27, 본조 개정)
- 제 15 조(의견의 청취)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 16 조(의결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정관의 변경,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

-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(2009. 4. 30., 2016. 10. 31. 본항 개정)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(2015. 3. 27. 본항 개정)
- ③ 이사는 각자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 그러나,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제 17 조(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,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하며, 그 안건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그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같이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,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 18 조(회의장소) 이사회는 회사내의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.
- 제 19 조(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)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(2015. 3, 27, 본항 개정)
 - ②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제 20 조(손실보상)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·현직 각 이사에 대하여 동인이 전·현직 이사라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, 기타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, 판결금액, 과징금, 벌금, 화해금액, 기타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한다. (2016. 10. 31. 본조 개정)
- 제 21 조(의사록 발송) ① 이사회 종료일부터 14 일 내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감독기관 제출·등기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승인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. (2009. 4. 30. 본항 개정)
- 제 22 조(연수) 이사회는 신임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제 23 조(평가) 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는 연 1 회 이상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체 활동내역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.
 - ②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 1 회 이상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.
 - ③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평가방식과 평가항목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④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점검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- ⑤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평가결과를 「지배구조내부규범」 제 3 조 제 2 항에 따른 지배구조연차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.
 - [2016, 10, 31, 본조 신설, 2024, 9, 30, 본조 개정]
- 제 24 조(이사회 지원조직 운영) ①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고,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거나,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조직으로서 "이사회사무국"(이하 "사무국"이라 한다)을 구성하여 운용한다.
 - ② 사무국장은 부서장급 이상으로 하며, 그 임면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 25 조(이사회사무국) ①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한다. (2016. 10. 31. 본항 개정)

- ② 사무국에 대한 성과평가와 사무국장에 대한 개인평가는 각 사외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 의장이 평가한다. (2018. 4. 19. 본항 개정)
- ③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사무국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
- 2.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유지
- 3.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
- 4. 제 19 조에 따른 사외이사 활동지원 및 정보제공 등 (2010. 3. 3., 2015. 3. 27., 2016. 10. 31. 본호 개정)
- 5.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실무지원
- 6. 이사회 및 이사의 평가에 관한 실무지원
- 7. 이사 선임 관련 실무지원 (2016. 10. 31. 본호 개정)
- 8. 이사 연수에 관한 실무지원
- 9.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
- 10.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지시사항 처리 (2010. 3. 3. 본호 개정)
- 11.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업무 (2010. 3. 3. 본호 신설)